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53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살처분·도태 보상금의 수급권 조정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정희용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4. 12. 23.

다. 회 부 일 : 2024. 1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라 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24. 5. 30. 선고 2021헌가3 결정)을 한 바 있음.

한편, 이와 관련 살처분 등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가축의 가치에는 사육비, 가축 사료비, 사육에 들어간 노동력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에 의해 보상금을 분배·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당사자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각각 지급하는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보상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3호·제3호의2, 같은 조 제8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살처분·도태 보상금의 수급권 조정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 또는 도태(淘汰)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 지급 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각자에게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보상금의 지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상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압류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48조(보상금 등)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현행	개정안
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u>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u>	----- -----. ----- <u>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에 각각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에 각각 지급하는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u>
3의2.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u>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u>	3의2. ----- -----. ----- -----<u>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에 각각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에 각각 지급하는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u>
4. ~ 6. (생략) ② ~ ⑦ (생략) <u><신설></u>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u>⑧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u>

현행	개정안
제48조의3(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①·②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u>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48조의3(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협의회는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 단서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u>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처분 및 도태명령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3호·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살처분하거나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 등의 살처분¹⁾을 명하도록 하고,

우역, 우폐역 등 특정한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는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 범위에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 예방적 살처분²⁾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가축의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경우 등에는 가축방역관에게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 1) 살처분이란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통해 가축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락사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매몰·화학적 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
 - 2) 예방적 살처분이란 가축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걸릴 가능성이 있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는 것을 의미
 -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또한,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우역, 우폐역 등의 특정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그러나 가축을 살처분·도태하는 것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바,⁵⁾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⁶⁾⁷⁾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1조를 준용한다.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1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5) 2021헌가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 단서 위헌제청

“살처분은 가축의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부담임이 분명하고,”

6) 축산계열화사업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받는 사업이며, 축산계열화사업자란 계약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받는 사업을 말한다.

5.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란 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축산계열화사업의 방식으로 가축을 사육하게 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방식은 다르더라도 가축의 사육 결과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사육된 가축의 대금 상당액에서 사육비 등 농가지급금을 뺀 나머지를, 계약사육농가는 사육비 등 농가지급금을 각각 얻게 됨.

그러나 2024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 제청(2021헌가3)’ 사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⁹⁾을 선고함에 따라 동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살처분 보상금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함.

동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① 보상금 지급 방식에 관한 부분과 ② 보상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압류를 금지하는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이하에서는 ③ 부칙을 포함하여 순차적으로 검토함.

① 보상금 지급 방식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 지급 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3의2.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9) <주문>

가축전염병 예방법(2018. 12. 31. 법률 제16115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 (일부 발췌)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라 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오직 계약사육농가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재산권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에 적절한 보상조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제량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각자에게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보상금의 지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하는 가축을 살처분·도태하는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사육된 가축의 대금 상당액에서 사육비 등 농가지급금을 뺀 나머지를, 계약사육농가는 사육비 등 농가지급금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의 규모는 이러한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의 손실에 비례하여야 할 것임.

현행법은 살처분·도태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일괄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계약사육농가가 보상금 수급 이후 정산을 통해 손실에 비례하도록 보상금을 배분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계약사육농가의 도산·제3자의 압류 등으로 인한 정산불능 등의 상황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현행법의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보상금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¹⁰⁾ 보상금의 배분에

10) 참고로, 축산계열화사업은 양자간 사적 계약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국가가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곤란할 것으로 보임.

관하여 전적으로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맡기고 있으나,

교섭력의 차이 등에 따라 불균형 또는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각 당사자가 살처분·도태에 따른 손실에 비례하는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협의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입법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에서는 토지 수용보상금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에서는 농지의 수용으로 인해 발생한 영농손실을 농지의 소유자 및 경작자에게 각각 나누어 보상하는 방안을 두고 있음.¹¹⁾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개인별 보상)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④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제7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이하 “실제 경작자”라 한다)간에 협의회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에 협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상

1) 제1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제2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자에게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실제 경작자에게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 중 농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② 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양도·담보 제공·압류 금지

개정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양도·담보 제공·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계약사육농가가 살처분 및 도태 후 다시 가축을 사육하여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 됨.

가축의 살처분·도태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압류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지급받은 보상금을 통한 가축의 구매, 축사 방역조치, 재입식 등을 추진하는 것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영세한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계약사육농가는 축산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보상금의 양도·담보 제공·압류를 금지를 통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계약사육농가 등이 축산업을 다시 영위하도록 하고, 축산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채권·채무 관계 등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보상금의 양도·담보 제공·압류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법」, 「의료급여법」 등이 있음.

【 보상금 등 양도·담보 제공·압류 금지에 관한 타법 사례 】

법률명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및 압류 금지
형사보상법	- 보상청구권과 보상금 지급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및 압류 금지 -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 압류 금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압류 및 담보제공 금지
약사법	- 피해구제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압류 및 담보제공 금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의 양도, 압류 및 담보제공 금지 - 단,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 - 보험금 금액의 압류 금지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양측 모두의 보상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에 동의하며, 제3자가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담보 제공·압류 등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국세청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국세를 완납하지 못하여 체납한 경우 해당 보상금은 체납자가 보유한 채권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다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국세징수법 등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임.

③ 부칙

부칙 제2조는 살처분 및 도태명령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살처분하거나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일 이후에 살처분·도태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시행일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시행일 이전에 살처분·도태를 하고 시행일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에 대하여 전자로 해석하는 경우 구법을 적용하고 후자로 해석하는 경우 신법을 적용하게 되어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24

[참고] 위헌제청 사건의 배경 및 경과

1. 위헌제청 배경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피고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위탁사육농가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다투고 있는바, 위헌 결정이 나면, 살처분 보상금의 채권은 원고(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귀속되어 원고의 청구(채권 강제집행 불허)는 인용이 가능

* 당해소송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73504

2. 위헌제청 사건 진행경과

- '20.6.12,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신의 돼지 위탁사육 농가와 채무관계에 있는 채권자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의 소를 제기
- '21.1.25.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제청 통지
 - 제청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사건 : 2021헌가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 단서 위헌제청
 - 위헌제청 대상 법률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

▶ 제48조(보상금 등) ①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 '24.5.30. 헌법재판소, 헌법불일치 결정

3. 위헌제청 사건의 권리 관계도

